



2024년부터

달라진 「농업경영체 등록제도」 안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(2024.2.17.) -

*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: ☎ 1644-8778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·사무소 연락처(뒷면)

**'24년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·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
비농업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.**

- ◆ 「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(법 제4조제3항)
- ◆ 「증빙 자료」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 및 현장조사가 강화됩니다.(법 제5조)
- ◆ 농업경영정보의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(법 제5조, 제6조)
 - 농업경영정보 정확도 검증을 위한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.(법 제5조의2)
 -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 정정·말소 기준이 아래와 같이 구체화 되었습니다.(법 제6조의2제1항)

〈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〉

구 분	정정 또는 말소 사유
현행 규정	① 거짓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(변경)한 경우
	② 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(3년)이 경과한 경우
	③ 주소, 소재지, 품목·면적 등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
신설 규정	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
	②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인 경우
	③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
	④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
	⑤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자의 해당 농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
	⑥ 관련 증빙자료 제출(30일 내)을 거부하는 경우

- ◆ 거짓·부정등록자 및 증명서류 거짓 확인·증명자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.(법 제31조)

위반행위	현 행	개 정	관련행위
거짓·부정등록자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벌금 (500만원 이하)	법 제31조의2제2항
거짓·부정등록 확인·증명자	-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법 제33조제1항제2호

- ◆ 거짓·부정등록으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, 1년 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.
(법 제6조의2제4항)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